

구 리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시 보

제 2219호
2022년 12월 22일(목)

차 례

자치법규

- | | |
|-----------------|-----------------------------------|
| ○ 구리시 조례 제2069호 |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070호 |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071호 |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072호 |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073호 |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074호 |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075호 |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076호 | 구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077호 |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구리시 조례 제2078호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고시공고

- | | |
|----------------------|------------------------------|
| ○ 구리시 고시 제2022-142호 |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
| ○ 구리시 공고 제2022-2027호 | 공시송달공고 |

회람

제319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2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 명)

구리시 조례 제2069호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이를 희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청년 창업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지원”이란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공간 제공, 사업화 역량 강화 교육, 경영, 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5.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시가 청년들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6. “창업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 공간을 말한다.

7. “입주자”란 창업을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창업 및 창업기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창업 촉진과 창업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및 입주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주소 지원
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 지원
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 지원
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6.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지원
7. 사업화 자금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창업과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명칭) ① 센터의 명칭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또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별도의 명칭은 공모 등의 방식으로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
2.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3.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우수한 청년 창업기업 유치
5.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6.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센터는 제1항의 사업과 연계하여 청년의 창직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센터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청년창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청년창업육성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지

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리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 수립
2.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4. 센터 사업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5.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6. 센터의 운영규정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창업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1명
2. 창업지원 전문가
3. 창업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

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

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창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가 개최된 경우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1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시장은 창업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는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1. 제안이유

청년의 창업활동 촉진을 통해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년을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만 15세 이상으로 규정함 (안 제2조)
- 나. 창업육성·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 및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안 제6조)
- 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 규정함 (안 제8조~안 제11조)
- 라. 구리시 청년창업육성위원회 운영에 관해 규정함 (안 제12조~안 제17조)
- 마. 청년창업 활성화 기여자나 우수 청년창업가 포상을 규정함 (안 제19조)
- 바.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부칙안 제3조)

제319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2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070호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 ‘3자녀 이상 다자녀세대’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구리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위탁 기간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감면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개정함. (안 제6조제8호)
- 나. 위탁 기간을 3년으로 개정함. (안 제11조제5항)

제319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2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071호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7호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등 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제7호에”를 “제7호부터 제8호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지속해서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신장장애인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 등에 대한 의료비는 90%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에 있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구리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장애인복지 지원대상 및 사업에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등 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15조 제7호)
-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등 의료 지원사업”을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 제2항)

제319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2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072호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9년에는 매월 2,246,940원으로 하고 2020년부터 2022년” 을 “2023년에는 매월 2,405,8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구리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통보받은 구리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변경(안 제7조)

1) 2023년 : 월2,405,800원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만큼 합산한 금액)

2) 2024년부터 2026년까지 : 전년도 월정수당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

제319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지속
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2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 명)

구리시 조례 제2073호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구리시의 지
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
능발전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행정제도 등을 정비하고 혁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시의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에는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시장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경우 필요하면 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제9조(구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지

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단·소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경제, 사회, 환경 등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안전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조사·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점검, 보고서 작성 등을 협의회,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홍보·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19조(의회 등 보고) ① 시장은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입안자	담당관 성명	기획예산담당관 박근열
	팀장 성명	기획팀장 구자원
	담당자 성명·전화	차현덕 031-550-2751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1. 제안이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2022. 7. 5.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의 체계적 추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구리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5조)
-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15조)
- 구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조사·연구, 교육·홍보·협력 및 시 의회 등 보고에 관하여 정함.(안 제17조~제19조)

제319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2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074호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성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상운
	팀 장 직위.성명	장애인복지팀장 최준정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정지은 550-8383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간이 2022년 말 종료되나 등록장애인 수와 복지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 참여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목표액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함.(안 제3조)
 - ☞ 존속기한 연장 :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연장
-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은 그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안 제19조)

제319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2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075호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을 “고위험군 환자 가족, 노인부부 및 여성 등” 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를 “홍보해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

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입 안 자	담당부서장 직위·성명	보건행정과장 이 진 수
	팀 장 직위·성명	예방의약팀장 문 복 형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의료기술서기 배지윤 550-8640

구리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심폐소생술 교육·캠페인 추진 시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장려하고 시민의 보건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대상에 고위험군 환자 가족 외에 노인부부, 여성 등을 추가·확대함. (성별영향평가 시 개선의견)(안 제3조제2항)
- 심폐소생술 교육·캠페인 시 홍보물품 배부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8조제2항)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문은 그 규정이 없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안 제10조)

제319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2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076호

구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한다.
2. 경제·사회·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접 시행하거나 발주하는 사업에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

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정책에 참여하며 협력해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리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구리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해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제8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9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기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사무국)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8조(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 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

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시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시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

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하여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5조(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해야 한다.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탄소중립 지원센터 대상기관)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32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

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구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

소관 부서		환 경 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환경과장 변상국
	팀 장 직위·성명	기후대응팀장 박자연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보건주사보 김정은 550-2241

구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2022. 3. 25.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자체 의무사항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구리시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
-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규정함. (안 제6조)
- 구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 제17조)
-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 제25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6조 ~ 32조)

제319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2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077호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요금 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 5에 따라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수도과
입 안 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수도과장 나 창 노
	팀 장 직위·성명	수도행정팀장 이 영 주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행정주사 한명순 550-8570

[별표 5]

수도요금 감면기준(제36조 관련)

감면사유별	감면율(양)	적용요건	감면기간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전액		
2.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적수 등 수용가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피해량	해당월
3.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었을 경우 전수용가	100% 이내	공공기관 제외	연간 6개월 이내
4. 빗물이용시설 설치자, 중 수도설치자, 하·폐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자	65/100	재이용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매월
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누수 수용가 -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땅속 또는 벽체 속의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 (다만, 화장실의 변기나 보일러 누수 등 육안식별이 가능한 지상 누수 제외)	50%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은 누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초과한 누수량 중 50%는 감면하고 잔여수량에 대하여 1단계 요금을 적용하여 합산 부과	1개월분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톤/월	가정용	매월
7.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5톤/월	가정용	매월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5톤/월	가정용	매월
9.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5톤/월	가정용	매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톤/월	가정용	매월
1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반용 및 대중탕용 관내 수도 사용 수용가	50/100	공공기관, 학교, 대기업 제외	3개월 이내
12.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도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0/100		

※ 감면되는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경우에는 감면액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제11호의 경우에는 202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관내 수도 사용자에게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의미 파악이 어려운 용어를 수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관내 수도 사용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일반용 및 대중탕용에 대한 수도요금을 한시적(3개월)으로 50% 감면하는 규정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함.(안 제36조 및 별표 5 제11호)

제319회 구리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12월 22일

구 리 시 장

백 경 현 (서명)

구리시 조례 제2078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하수과
입 안 자	담당부서장 직위·성명	하수과장 공 석
	팀 장 직위·성명	하수행정팀장 최 성 미
	주 무 관 성명·전화번호	지방공업서기보 양경하 550-8956

[별표 8]

하수도요금 감면기준(제27조제1항 관련)

감면사유별	감면율·량	적용요건	감면기간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전액		
2.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경계”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고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었을 경우 전수용가	100% 이내	공공기관 제외	연간 6개월 이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5톤/월	가정용	매월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5톤/월	가정용	매월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5톤/월	가정용	매월
6.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5톤/월	가정용	매월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톤/월	가정용	매월
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 일반용, 옥탕용, 산업용 공공하수도 사용 수용가	50/100	공공기관, 학교, 대기업 제외	3개월 이내

※ 감면되는 하수도요금이 실제 사용한 하수도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하수도요금을 감면한다.

※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감면액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제8호의 경우에는 202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관내 하수도 사용자에게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등 관내 하수도 사용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한시적(3개월)으로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별표 8)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구리시 인창동 648-70번지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추진 중인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구 리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48-70번지 일원

나. 면 적 : 9,071.75㎡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 수 예 정 일 : 미정

나. 준 공 예 정 일 : 미정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 합 명 칭 : 인창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순옥)

나.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인창2로63번길 14-7

5. 조합설립변경인가 변경 내용

가. 사무소 이전에 따른 조합정관 변경

이전 조합사무소 주소	현 조합사무소 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2로77번길 51-14	경기도 구리시 인창2로63번길 14-7

나. 조합 임원 선출(이사 2인)

소관부서	균형개발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김인혜	전화번호	031-550-8302
------	-------	-------------	---------	------	--------------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구리시 지적재조사사업(우미내지구)」의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불임참조
2. 공고기간 : 2022. 12. 22. ~ 2022. 1. 6.(15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2023년 구리시 지적재조사사업(우미내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5.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31-550-21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2.

구 리 시

